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3
----------	------

제출연월일: 2018. 11. 8.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금 운용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 법정적립액 ⇒ 최저적립액, 장기에치기금액 ⇒ 의무예치금액

나.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안 제4조)

다. 기금총괄관리관 명시 및 기금운용관 변경(안 제6조)

- 기금운용관: 담당 국장 → 담당 과장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 등(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목 추가(안 제8조)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 절차 구체화(안 제1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3. 근거법규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제2항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4.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의견 반영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구성비율 관련 문구 수정
- 라. 입법예고: 2018. 9. 17. ~ 2018. 10. 8.(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경비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마.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
비구입, 수당 및 경비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영 제74조제3호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영 제74조제4호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영 제74조제5호에 따른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에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영 제74조제7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영 제74조제9호에 따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영 제74조제10호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계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기금의 운용 계획
- 2. 기금 계획의 변경사항
- 3. 기금의 결산
-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

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 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③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
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41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이미정	전화번호 052-290-405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1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的主要内容는 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안 제4조), 다. 기금총괄관리관 명시 및 기금운용관 변경(안 제6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 등(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목 추가(안 제8조), 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 절차 구체화(안 제1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등에 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22 275 831 696"> <p>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td> <td data-bbox="831 275 1465 696"> <p>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u>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u></p> </td> </tr> </table>	<p>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u>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u></p>
<p>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u>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u></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18년 10월 12일 까지</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09월 27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p> <p>안전총괄과장 귀하</p>			